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66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허 영 · 김승원 · 박 정  
이해식 · 서삼석 · 한민수  
문진석 · 홍기원 · 박상혁  
소병훈 · 김태선 · 정진욱  
박용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항 · 제51조제2항 신설 및 제57조제2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사업자·사업자단체”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51조(과징금) ① (생략)</p>	<p>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51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p>

<신 설>

②·③ (생 략)

⑤ (생 략)

<신 설>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